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25. 6.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4)

□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인권 저해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관과 교육환경 침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 이에 안 제4조 제1항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을  
진흥기본계획에서 발전기본계획으로 규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7조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있어 교육감의 시책 수립·시행 및  
장애학생 인권지원당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9조의4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편의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